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 해외에서 어획한 어종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불법어획 여부 확인을 위한 어획증명서의 보안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허가정수 조정 등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개정)
- 나. 지위 승계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 신설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의 신고 시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 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 라.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종의 국내 반입 시 불법어획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조업국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서식 개정)
- 마. 해외 양륙 및 전재 결과에 대한 선박의 이력 추적 등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보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및 제17호의18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을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원양어업 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6. 선박검사증서 사본

7. 선박등기사항증명서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업체명(국문/영문)			법인등록번호	
	주소(국문/영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국문/영문)			생년월일	
승계를 받는 자	업체명(국문/영문)			법인등록번호	
	주소(국문/영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국문/영문)			생년월일	
사용어선	어선 종류(국문/영문)				
	선명(국문/영문)				
	어선번호				
	톤수(톤)				
	마력(HP/PS)				
	IMO 번호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원양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국문/영문)					
허가기간					
승계사유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1부 5.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6.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7. 선박등기사항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자	위반내용	진행상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와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는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를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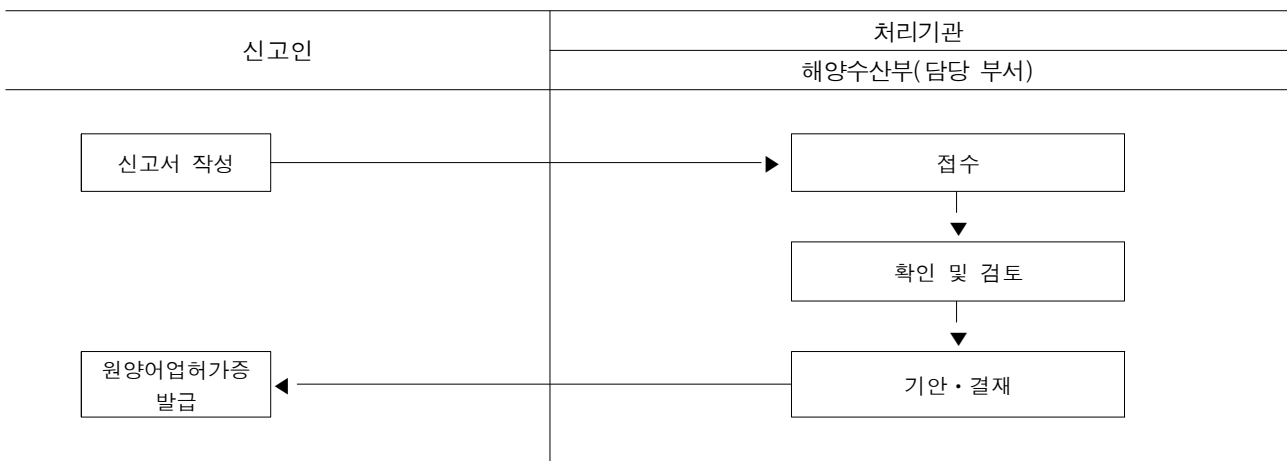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THE REPUBLIC OF KOREA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기관명, 주소, 연락처)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contact details)	
3. 조업 선박명 Name of fishing vessel	4. 조업 선박의 국적 Nationality of fishing vessel	5.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6. 국제무선호출부호 IRCS
7. 조업 선박의 선장 Master of fishing vessel	서명 Signature	8. 조업 선박의 운영자 및 연락 정보 Operator of fishing vessel and contact details	
9. 조업허가 번호 Fishing authorization number		10. 조업허가 당국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authorization	
11. 조업 기간 Period of fishing operation	12. 조업 구역 Area of fishing operation	13. 어구종류 Type of fishing gear	
14. 어종 Species	15. 어획총량(kg)/가공총량(kg) Weight(kg) / Processed weight(kg)	16. 제품유형 Type of Products	
17. 양륙항 Name of landing port		18. 가공장소 Place of Processing	
19. 전재 정보(해상) transshipment at sea			
전재일자/위치 Transshipment date/Position	전재 중량(kg) Weight of catches transhipped(kg)	수취 선박의 선장 Master of receiving vessel	서명 및 날인 Signature and Seal
수취 선박명 Name of receiving vessel	수취 선박의 기국 Flag of receiving vessel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국제무선호출부호 IRCS
20. 양륙 정보(해외 항구 내) Landing in a foreign port			
이름 Officer's Name	당국 Authority	서명 Signatur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양륙항구 Name of Landing port	양륙일자 Landing date	날인 Seal(stamp)
21. 수출자 성명/서명/연락 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22. 수입자 성명/연락 정보 Im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23. 당국 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직위 Officer's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일자 Date	날인 Seal(stamp)
※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 및 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 첨부 List attached	

210mm×297mm[백상지(80g/㎡)]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 (THE REPUBLIC OF KOREA SIMPLIFIED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기관명, 주소, 연락처)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contact details)		
3. 어종 Species		4. 중량(kg) Weight(kg)		
5. 어획물을 제공하는 선박 목록과 선박별 어획물 중량 List of vessels that provided catches and weight of catches by each vessel (name, registration number) :				
선박명 Vessel name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어획물 중량(kg) Weight(kg) of catches	어획지역 Area of fishing	전재위치 Transshipment Position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위 표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If there are more vessels to fill in, the table above may be annexed.				
6. 수출자 성명/서명/연락 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7. 수입자 성명 및 연락 정보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8. 당국 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직위 Officer's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일자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 및 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 첨부 List attached		

210mm×297mm[백상지(80g/㎡)]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 (Post-landing Report for Fishing Vessel landing into a Foreign Port)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The shaded fields are 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 연도-일련번호(yyyy-serial No.) 접수일자(Date of Receipt) : 년 월 일(yyyy. mm. dd.)

조업선 Fishing Vessel	선박명 Vessel Name	국제무선호출부호 IRCS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어업종류 Fishery Type	허가번호 License No.	허가기간 Fishing Authorization Period
운반선 Carrier Vessel	선박명 Vessel Name	국제무선호출부호 IRCS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전재기간 Period of Transshipment	전재위치 Location of Transshipment (use latitude & longitude, if at sea; in port/in EEZ/in high seas)	
양륙정보 Landing	양륙기간 Period of Landing	양륙항구/국가 Port/Country of Landing	

양 륵 내 역 Landing Details

어종 Species	조업기간 Fishing Period	조업수역 Fishing Area	처리형태 Presentation	포장형태 Packaging Type	양륙량(Kg) Quantities Landed (kg)	양륙 후 적재량(kg) Quantities Retained onboard after Landing (kg)	비고 Others
합 계 Total Quantities (kg)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외 양륙 결과를 보고합니다.
I hereby submit this post-landing report pursuant to Article 16(1)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Article 25(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보고자 :
Name of Submitter

(날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

Attn: Director-General of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

전재 결과보고서 (Post-transshipment Report Fishing Vessel Transshipping at sea)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검증"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The shaded fields are for official use only and the "verification section" is filled in by the relevant port authorities only when necessary.

접수번호(Receipt No.) : yyyy-serial No.	접수일자(Date of Receipt) : 년 월 일 yyyy. mm. dd.
-------------------------------------	---

조업선 (Fishing Vessel)	선박명 Vessel Name		국제무선호출부호 IRCS	
	선장명 Name of Master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운반선 (Carrier Vessel)	선박명 Vessel Name		선장명 Name of Master	
	선박기국 Flag	국 제 무 선 호 출 부 호 IRCS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전재활동 (Transshipment)	전재 허가번호 Transshipment Authorization No.			
	전재기간 Period of Transshipment		전재위치 Location of Transshipment	

전 재 내 역 Transshipment Details

어종 Species	조업기간 Fishing Period	조업수역 Fishing Area	처리형태 Presentation	전재 전 적재량(kg) Quantities onboard before Transshipment (kg)	전재량(kg) Transshipped Quantities (kg)	전재 후 적재량(kg) Quantities onboard after Transshipment (kg)	비고 Others
합 계 Total Quantities (kg)							

검증(Verification)/항구 내 전재(In-Port Transshipment Authorization)

성명 Name	당국 Port Authorities	서명 Signature	주소 Address	전화 Tel.
---------	---------------------	--------------	------------	---------

전재항구 Port of Transshipment	전재일자 Date of Transshipment	날인 Seal
----------------------------	----------------------------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재 결과를 보고합니다.

I hereby submit this post-transshipment report pursuant to Article 16(1)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Article 25-3(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보고자 Name of Submitter :

(날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

Attn: Director-General of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생 략)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 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 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u>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 발전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한다. ③ (생 략) <u><신 설></u>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 행령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원 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u> ---. ③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 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5호 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 에게 신고해야 한다.</u> <u>1.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을 상속받 은 경우만 해당한다)</u> <u>2. 어선을 취득하거나 임차한</u>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원양어업 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6. 선박검사증서 사본

7. 선박등기사항증명서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